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8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종전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직계 존·비속 등 다른 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여 감면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2조, 제4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 11. 10 ~ 2004. 11. 20.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(행정자치부)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본인” 다음에 “·배우자”를 삭제하고, 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” 다음에 “배우자,”를 삽입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본인” 다음에 “·배우자”를 삭제하고, 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” 다음에 “배우자,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이 봉 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김 향 용
	담당자 성명·전화	여 종 일 (행정 218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